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06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3년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정책사업비 (국제교류협력 추진) 1,045백만원 증가 및 예치금 1,045백만원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 : 6,339백만원

[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당초	1차 변경(A)	2차 변경(B)	3차 변경(C)	증감(C-B)
계	6,120	6,329	6,339	6,339	-
일반회계전입금	1,500	1,500	1,500	1,500	-
이자수입	91	91	91	91	-
기타수입	-	-	9	9	-
예치금회수	4,529	4,738	4,738	4,738	-

[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,      정책사업 단위)

구 분		당초 (A)	1차 변경	2차 변경	3차 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율 (D=C/A)
정책사업	계	6,120	6,329	6,339	6,339	-	-
정책사업비 (국제교류 협력추진)	계	1,703	1,783	2,033	3,078	1,375	80.7%
	비용자성 사업비	1,559	1,639	1,889	2,934	1,375	
	서울시립대	761	761	761	761	-	
	인재개발원	301	301	301	301	-	
	도시철도	52	52	52	52	-	
	소방안전	125	125	125	125	-	
	재해구호	320	400	400	400	80	
	해외도시 문화교류	-	-	250	250	250	
	청년해외봉사단	-	-	-	1,045	1,045	
	인력운영비	144	144	144	144	-	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5	5	5	5	-	0%
재무활동	예치금	4,412	4,541	4,300	3,255	△1,157	△26.2%

※ 최종 의회 의결액(당초, 제315회 정례회)대비 정책사업비(국제교류협력 추진) 80.7% 증, 재무활동(예치금) 26.2% 감

### Ⅲ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3년도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수입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증·감 조정하려는 것으로
  -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)**은 당초 지출계획(44억 1,200만원)보다 △26.2%, △11억 5,7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함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며, 다른 ②정책사업인 **국제교류협력추진**은 당초 지출계획(17억 300만원)보다 80.7%, 13억 7,5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**청년해외봉사단 사업**을 신규편성하기 위하여 지출계획 내에서 예치금(△10억 4,500만원)을 감액하여 청년해외봉사단(10억 4,500만원)으로 순증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인 바,
 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기금의 용도)

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
〈표 3-1〉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	당 초 ( A )	1 차	2 차	3 차 ( B 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 출 합 계	6,120	6,329	6,339	6,339	219	3.5
국 제 교 류 협 력 추 진	1,703	1,783	2,033	3,078	1,375	80.7
서 울 시 립 대	761	761	761	761	-	0.0
인 재 개 발 원	301	301	301	301	-	0.0
도 시 철 도	52	52	52	52	-	0.0
소 방 안 전	125	125	125	125	-	0.0
재 해 구 호	320	400	400	400	80	25.0
해 외 도 시 문 화 교 류	-	-	250	250	250	-
청 년 해 외 봉 사 단	-	-	-	1,045	1,045	-
인 력 운 영 비	144	144	144	144	-	0.0
재 무 활 동 (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)	4,412	4,541	4,300	3,255	△1,157	△26.2
행 정 운 영 경 비 (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)	5	5	5	5	-	0.0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지출계획,  
②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